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2
------	------

2019.12.17.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23일, 김인제 의원(찬성의원 36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2.1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인제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 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인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일부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를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음.

나. 일본식 한자어의 정의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규정된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여 다음의 일본식 용어와 한자어를 정비해 왔음.

〈법제처 일본식 용어 정비 목록〉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가도(假道)	임시도로	구좌(口座)	계좌	시말서(始末書)	경위서
가료(加療)	치료	납골당(納骨堂)	봉안당	엽연초(葉煙草)	잎담배
가식(假植)	임시식재	녹비(綠肥)	푼거름	일부인(日附印)	날짜도장
갑상선(甲狀腺)	갑상샘	미강(米糠)	쌀겨	주말하다(朱抹)	붉은 선으로 지우다
거래선(去來先)	거래처	미불(未拂)	미지급	지득(知得)하다	알게 되다
건정(鍵錠)	잠금장치	부락(部落)	마을	지참(遲參)	지각
거기(據)하다	규정하다	불입(拂入)	납입	침목(枕木)	받침목
견습(見習)	수습	불하(拂下)	매각	품신(稟申)	건의
계리(計理)	회계처리	사리(砂利)	자갈	하구언(河口堰)	하구둑
곤색(紺色)	감색	사찰(查察)	조사	행선지(行先地)	목적지
구배(勾配)	경사	시건(施鍵)	잠금		

- 일본어에서 한자를 읽는 방법은 음독(音讀, 음으로 읽는 것)과 훈독(訓讀, 뜻으로 읽는 것)이 있는데, 훈독은 한자로 적으면서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로 순수한 일본어라 할 수 있음¹⁾.
-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가도(假道)”, “계리(計理)” 등이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임.

〈법제처가 지정한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순화안
가도	임시 도로, 임시 통로
계리하다	회계처리하다, 처리하다
공하다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기타	그 밖의, 그 밖에
기하다	도모하다, 꺾하다, ~를 바탕으로 하다, 기하다
부착하다	붙이다, 부착하다
당해	해당, 그
명하다	처분을 하다, 명하다
미불	미지급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회의에 올리다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산입하다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포함하여 계산하다
응(應)하다	따르다, 응답하다, 받다, 응하다
자(者)	사람, 자

-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어를 음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변모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나 용어를 상당수 정비하였으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가 필요함.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조례안은 법제처가 지정한 일본식 한자어 중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로 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642건(조례안 발의일자 기준) 중에서 201건을 정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대상 조문은 432건임.
- 일본식 한자어의 사용은 자치법규의 해석과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대상 중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조문과 자구가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2019.9.26.제정)를 추가 정비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조례안	수정의견
<p>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제58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기타 이용율”을 “그 밖의 이용율”로 한다. 별표 5의 기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표 (4)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 것”으로 하며, 같은 표 (3)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 것”으로 한다.</p> <p>제12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부익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제58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안과 같음)</p> <p>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기타 이용률”을 “그 밖의 이용률”로 한다. 별표 5의 표 용도란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각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로, “벽이 기타인 것”을 각각 “벽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하며, “지붕이 기타인 것”을 “지붕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한다.</p> <p>제12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안과 같음)</p> <p><u><삭제></u> 제12조제3항 중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p> <p>제203조(「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익한”을 “회의에 부치는</p>

	<p>안건”으로 한다.</p> <p><신설> 제204조(「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신설> 제205조(「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신설> 제206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p>
--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대상 중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를 추가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누락된 조문을 추가함(안 제11조).
- 오타를 수정하고 개정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8조)
- 조례에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누락된 조문을 추가함(안 제126조)
- 새로 제정된 조례를 추가함(안 제203조부터 안 제206조까지)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12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대상 중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를 추가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누락된 조문을 추가함(안 제11조).
- 나. 오타를 수정하고 개정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8조)
- 다. 조례에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누락된 조문을 추가함(안 제126조)
- 라. 새로 제정된 조례를 추가함(안 제203조부터 안 제206조까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중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58조 중 ““기타 이용율”을 “그 밖의 이용율””을 ““기타 이용률”을 “그 밖의 이용률””로 하고, “별표 5의 기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표 (4)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 것”으로 하며, 같은 표 (3)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 것”으로 한다”를 “별표 5의 표 용도란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각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로, “벽이 기타인 것”을 각각 “벽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하며, “지붕이 기타인 것”을 “지붕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26조 중 “제1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2조제3항 중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203조부터 제20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204조(「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5조(「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5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p> <p>제10조제2항제1호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u>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u>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p> <p>제3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제58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그 밖의”로 한다.</p> <p>제5조제3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p> <p>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p> <p>제9조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p> <p>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기타 이용율”을 “<u>그 밖의 이용율</u>”로 한다.</p> <p><u>별표 5의 기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표 (4)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 것”으로 하며, 같은 표 (3)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 것”으로 한다.</u></p> <p>제12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7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p><u>제1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p> <p>제10조제2항제1호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u>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u>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p> <p>제3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제58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안과 같음)</p> <p>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기타 이용률”을 “<u>그 밖의 이용률</u>”로 한다.</p> <p><u>별표 5의 표 용도란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각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로, “벽이 기타인 것”을 각각 “벽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하며, “지붕이 기타인 것”을 “지붕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한다.</u></p> <p>제12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안과 같음)</p> <p><u><삭제></u></p> <p><u>제2조제3항 중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u></p> <p><u>제203조(「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p> <p><u>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u></p> <p><u>제11조제2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u></p>

<신설> 제204조(「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신설> 제205조(「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신설> 제206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하여 시민 중심 언어의 자치법규 반영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 및 그 밖에 이와”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분류란 중 “기타”를 “그 밖의 시설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시설비”를 “그 밖의 시설비”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

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 중 “그 내용 기타”를 “그 내용,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2 중 “공작물 기타의”를 “공작물, 그 밖에 물품이나 공작물의”로 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폐기방법 란의 “기타”를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폐기사유 란의 “기타”를 “그 밖의 사유”로 하고, 폐기
방법 란의 “기타”를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

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카목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장비”를 “그 밖의 장비”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기타”를 “그 밖의 비용”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 각 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2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2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2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기타 이용률”을 “그 밖의 이용률”로 한다.

별표 5의 표 용도란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각각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건물”로, “벽이 기타인 것”을 각각 “벽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하며, “지붕이 기타인 것”을 “지붕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옥내·외 기타공간”을 “그 밖에 옥내·외의 공간”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당해지구”를 “해당 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

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등 그 밖에”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7220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7조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을 “위원회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제3항제4호 및 제5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7조(「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8조(「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9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110조(「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1조(「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2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의2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부의”를 “의뢰”로 하고,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3조(「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4조(「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15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6조(「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7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8조(「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9조(「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0조(「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1조(「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2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23조(「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4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5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7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여비 기타”를 “여비,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8조(「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9조(「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0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를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제8호 단서, 같은 항 제9호가목, 나목 및 마목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단서, 제2호 본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별표 1의 공공·공용 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당해시설물”을 “해당시설물”로 한다.

제131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당”을 “당해”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당”을 “당해”로 한다.

제132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3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4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5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당해직”을 “해당 직위”로 한다.

제136조(「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7조(「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8조(「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9조(「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0조(「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1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2조(「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43조(「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4조(「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5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회복 기타”를 “회복,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6조(「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부의할”을 “제출할”로 한다.

제147조(「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8조(「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9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그 밖의 부의안건”을 각각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부의하여야”를 “부쳐야”로 한다.

제37조제9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1항제9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1조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150조(「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심의안건”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1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부의 안건”을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한다.

제152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4항제3호 중 “조사 기타”를 “조사, 그 밖에”로 한다.

제153조(「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4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5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6조(「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7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8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9조(「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0조(「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61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2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부외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163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부외하는”을 “회의에 부

치는”으로 한다.

제164조(「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5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6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7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68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9조(「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0조(「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1조(「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2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3조(「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4조(「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라목 중 “밖에 기타”를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5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6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7조(「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8조(「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9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0조(「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1조(「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2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기타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3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허위 기타”를 “허위, 그 밖의”로 한다.

제184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5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공사”를 “그 밖의 공사”로 한다.

제186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7조(「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8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9조(「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0조(「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1조(「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2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협의회에 부의할”을 “협의회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193조(「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4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5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6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의 시설

별표 2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표 기준및이용료란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그 밖의 대관

별표 2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입장권 발매
행사의 기준및이용료란 중 “기타공연”을 “그 밖의 공연”으로 한다.

제197조(「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
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8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
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오수 기타 하수”를 “오수, 그 밖의 하수”로 한다.

제19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0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1조(「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2조(「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3조(「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204조(「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5조(「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6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